

정정 신고 (보고)

2020년 01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 프랭클린 미국 금리연동 플러스 특별자산 자투자신탁(대출채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12.23

3. 정정사유 :

- 연갱신에 따른 변동성 수치 변경 및 재무정보 등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4등급→5등급)

4. 정정사항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		
2. 집합투자 기구의 연혁	-	2020년 01월 17일 펀드 결산시 측정한 변동성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4등급→5등급) 및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19.9.16.)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5. 운용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경력년수 업데이트
8.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 대상	가. 투자 대상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9. 수익증권 등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가. 투자 대상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9. 수익증권 등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 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9.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 전략 및 수익 구조	나. 위험관리 [환헤지] ④ 환헤지 비용	나. 위험관리 [환헤지] ④ 환헤지 비용 업데이트
10. 집합투 자기구의 투 자위험	<p>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 자 유형 (1)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 급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 도를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되었 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설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 을 재분류하며, 이 때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p> <p>(2) 이 투자신탁은 당사가 정의한 6가 지 투자위험등급들 중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당사의 투자위험등급상 네 번째로 높은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 으므로, 당사의 투자신탁에 투자하려 는 고객들 중에서 보통의 투자위험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 해외 변동금리 대출채권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기에서 열거한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감수 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채권 이 자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보 다 적합합니다.</p>	<p>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 자 유형 (1)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집합투 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익 률 변동성은 2.34%입니다. 수익률 변동성이란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지 난 156주간의 집합투자기구 주간수익 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입니다. 매 결 산시마다 직전 3년(156주)의 주간수 익률 표준편차를 재측정하게 되며, 이 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p> <p>(2) 이 투자신탁은 당사가 정의한 6가 지 투자위험등급들 중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당사의 투자위험등급상 두 번째로 낮은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 으므로, 당사의 투자신탁에 투자하려 는 고객들 중에서 낮은 투자위험 성 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 해외 변동금리 대출채권의 특성을 충 분히 이해하고, 상기에서 열거한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감수하 면서 경쟁력 있는 대출채권 이자수익 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적합 합니다.</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 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 게 되는 보수, 비용]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 게 되는 보수, 비용] 업데이트
	나. 과세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	나. 과세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p>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p>	<p>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p>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p>가. 요약재무정보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p>	<p>가. 요약재무정보 업데이트 나. 대차대조표 업데이트 다. 손익계산서 업데이트</p>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p>가. 연평균 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다. 집합투자기구 자산구성 현황</p>	<p>가. 연평균 수익률 업데이트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업데이트 다. 집합투자기구 자산구성 현황 업데이트</p>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p>가. ~ 다.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p>	<p>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p>